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2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3. 21.

김석한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3. 2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4. 9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원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명시(안 제7조)
- 2)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기준 정비(안 별표 1)
- 3)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조, 별표 2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률 시행령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15호
 - 예고기간: 2025. 3. 21.(금) ~ 2025. 3. 27.(목) [6일간]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고,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조) 목적

-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 위임근거를 명시하고, 조문 일부 내용을 정비함.

- (안 제7조)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

-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명시하고, 기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.

- (안 별표 1)

- 안 제7조에 따른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, 시설사용료의 내용 중 기준 규격, 수용인원, 기준인원 추가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함.

- (안 별표 2)

- 관련법령 조문 정비 및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내용을 정비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4. 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